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정 2011. 4. 22]

[개정 2013. 4. 5]

[개정 2013. 8.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정관 제7조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30)

제2조(적용범위)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추천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후보 지원자(이하 “지원자”라 한다)의 자격요건 및 모집방법 결정
2. 지원자에 대한 심사기준, 심사절차 확정 및 지원자 심사
3. 임원후보자 결정 및 추천
4. 임원후보로 추천될 자와의 정관 제19조에 의한 경영계약안에 관한 협의
5. 기타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진흥원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임원의 임기 만료 2월 이전에,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인에서 15인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써 정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2인 또는 3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한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 직위 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위원 중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를 2분의 1로 할 수 있다.
- ⑥ 이사회는 제4항의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자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비상임이사의 추천과 안전행정부 국가인재 DB 등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3.4.5)

제5조(위원) ① 진흥원 임직원과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진흥원 비상임이사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4.5)

- ②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선임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에는 진흥원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진흥원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진흥원 구성원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추천된 자 중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추천 절차 및 운영에 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추천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진흥원 구성원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성별·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6조(위원장)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공정성 및 비밀유지의무) ① 위원은 후보자의 심사·추천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 및 관계자 등은 후보자의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 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추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 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직위의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에 의한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제에 의하여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추천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추천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직제에 의하여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이 된다.

제11조(부의절차) ① 추천위원회에 의안을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원장이 상정한다. 다만, 원장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간사가 상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위원회 소집결정을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위원에게 부의(안)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위원회 소집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①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후임 임원 선임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 구성 후 최초 추천위원회는 간사가 소집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추천위원회 결정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정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이사 중에서 위원이 된 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8.30)

제13조(지원자 모집) ① 지원자 모집은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 결정한다. 다만, 원장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의 경우 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1주 이상 공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3.4.5)

④ 추천방식의 경우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안전행정부 국가인재 DB, 추천위원회 위원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3.4.5)

⑤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으로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지원자가 모집 직위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가 모집 직위의 2배수 이상이 되도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원장 직위 지원자의 경우 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원장 직위 지원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 ⑦ 원장 직위 지원자 모집시 추천위원회의 결정으로 현직의 유능한 전문가들의 응모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공개접수방안 도입 및 지원서 제출시 제6항 제2호를 간단하게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심사기준) ① 원장 직위 지원자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지역혁신 및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진흥원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5. 기타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감사 직위 지원자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1. 감사인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투철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③ 정관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3.8.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진흥원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진흥원의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3. 진흥원의 법률자문, 경제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 회계사, 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 직위 지원자에 대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직위 지원자에 대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제2호>와 같다.
- ⑦ 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심사기준의 주요내용을 공개모집 공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추천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해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되 총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의 경우 기관특성, 모집방법 등을 감안하여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추천위원회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에서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되 후보자 수는 3배수 내지 5배수 이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서류 및 면접심사시 지원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최고점수 부여자와 최저점수 부여자를 제외한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은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 ⑥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지원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 한다.
- ⑦ 원장 직위 지원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평가표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⑧ 감사 직위 지원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평가표는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후보자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3배수 내지 5배수로 최종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되, 직위 특성, 대상 직위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감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3.4.5)

- ②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

하는 후보자 추천사유서(별표 제7호 서식) 및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별표 제 8호 서식)를 작성하여 추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가 지원 또는 추천된 자에 대한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모집을 실시하는 경우 이전 모집방식이 공개모집인 경우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방법을 병행하여 재모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의해 재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추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원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⑥ 임원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제반 서류는 관련 법률이나 지침 등에 의해 정해진 것에 따른다.

제17조(경영계약안 협의) ① 추천위원회는 원장 후보자를 선정할 경우 이사회 에서 정한 경영계약안에 대하여 원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4.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계약안에는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 및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간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비공개 로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한 경우에도 위원 또는 지원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회의록 등의 보관) ① 진흥원은 추천위원회 회의록 등 추천위원회 관련 서류(이하 “관련서류”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의 보존년한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회의수당) 진흥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심의활동에 필요한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2011.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원장 직위에 대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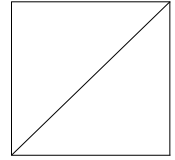
구분	세부기준
산업기술혁신, 지역혁신 및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진흥원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 해당분야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관경영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 노사화합과 기관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 건전한 윤리관, 청렴성,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등 기업적 마인드 ○ 국민수행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을 통한 국부창출 마인드

<별표 제2호>

감사 직위에 대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구분	세부기준
감사인으로서의 적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및 이에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 정직, 독립성 유지 여부 ○ 진흥원과의 이해관계 여부
신의성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업인으로서 책임과 의무 이행정도 ○ 업무상 지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공직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국가관, 공직윤리 체득 정도 ○ 건전한 윤리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3.4.5)



의안번호	제 호
의결일자	년 월 일

의결안건

(안)

제 회 임원추천위원회 안건

제 출 자	원장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 출 일 자	년 월 일

1. 의결주문

2. 제안사유

3. 주요골자

4. 관련근거

5. 기타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임원추천위원회 소집통보서

수 신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제위

20 . . .

제 차 임원추천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나. 장 소 :

다. 부의안건 :

라. 참고사항 :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명에 의하여

임원추천위원회 간사 ○ ○ ○ (인)

(별지 제3호 서식)

원장 직위에 대한 서류심사 평가표

후보명 : ○ ○ ○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산업기술혁신, 지역혁신 및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진흥원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20점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관경영능력	20점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20점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20점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20점					
합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V”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 ○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원장 직위에 대한 면접심사 평가표

후보명 : ○ ○ ○

구분	평가항목	평가점수					점수 (/만점)
		A	B	C	D	E	
전문성 (20)	1. 산업기술혁신, 지역혁신 및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진흥원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10	8	6	4	2	/20
	2. 현안과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10	8	6	4	2	
리더십 (20)	1. 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10	8	6	4	2	/20
	2. 출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10	8	6	4	2	
경영혁신 (20)	1. 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10	8	6	4	2	/20
	2. 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10	8	6	4	2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1.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10	8	6	4	2	/20
	2.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10	8	6	4	2	
윤리관 (20)	1.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10	8	6	4	2	/20
	2.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준수하고 출선하는 능력	10	8	6	4	2	
합 계						/100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감사 직위에 대한 서류심사 평가표

후보명 : ○ ○ ○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A (25점)	B (23점)	C (21점)	D (19점)	E (17점)
감사인으로서의 적격성	25점					
독립성	25점					
신의성실성	25점					
공직윤리	25점					
합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V”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 ○ ○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감사 직위에 대한 면접심사 평가표

후보명 : ○ ○ ○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A (25점)	B (23점)	C (21점)	D (19점)	E (17점)
감사인으로서의 적격성	25점					
독립성	25점					
신의성실성	25점					
공직윤리	25점					
합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V”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 ○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후보자 추천사유서

연번	성명 (생년월일,성별)	학 력	주 요 경 력 (최근 경력순 5개 내외)	추 천 사 유	비 고
1		○○고등학교(졸업년도) ○○대 ○○과(상동) ○○대 ○○학박사(상동)	○○대 ○○과 교수 (연도.월 부터~까지) ○○대 ○○과 부교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	
2					
3					
4					
5					

* 연번은 성명순

(별지 제8호 서식)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추천방식 ○명		추천방식 병행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월)~○.○(금)

- 응모자○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
- 부/처/청/홈페이지(20○○.○.○~○.○),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20○○.○.○~○.○)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 ※ 접수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나. 2차 공고 (필요시)

- 부/처/청/홈페이지(20○○.○.○~○.○),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20○○.○.○~○.○)
- ※ 접수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 명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공개모집
				추천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비 고
비상임이사				학계
비상임이사				경제계
비상임이사				언론계
이사회추천				노동계
이사회추천				법조계

(별지 제9호 서식)

년 월 일

제 회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 회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위원

○ 위원장 : ○ ○ ○ (소속 및 직책)

○ 위 원 : ○ ○ ○ (소속 및 직책)

○ ○ ○ (소속 및 직책)

○ ○ ○ (소속 및 직책)

○ ○ ○ (소속 및 직책)

○ ○ ○ (소속 및 직책)

○ ○ ○ (소속 및 직책)

○ ○ ○ (소속 및 직책)

○ ○ ○ (소속 및 직책)

※ 재적위원 ○명 중 ○명 참석

4. 회의결과

안 건 명	회의결과	비 고

5. 회의내용